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검 토 보 고 서



2025. 9.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17.

기획재경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기획전략과장)
- 제출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검토기간: 2025. 9. 4.(목) ~ 9. 10.(수)

##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규제혁신추진의 체계화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7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제7조, 제8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5. 7. 21. ~ 8. 11.)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규제개혁추진의 체계화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규제의 신설·운영 전 과정을 합리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를 우리 구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 위임 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주요내용으로

- 조례 제명을 정부의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규제정책의 흐름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변경하였음.

- 안 제6조는 법 제7조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는 법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과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규제개혁추진의 체계화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됨.

- 다만, 법 제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규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인 법 제8조<sup>1)</sup>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법령등에 5년 이내로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한 것으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고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 하였음.
- 이에 반해 안 제7조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 고 임의규정을 두었음. 이는 상위법령의 강행규정을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어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됨.
-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도 그 조례·규칙에서 임의로 재검토키한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규제일몰제 취지를 훼손하게 됨. 따라서 “규정할 수 있다.” 고 명시된 조문안을 상위법령인 법 취지에 맞게 “규정하여야 한다.” 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

1)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관 계 법 령】

##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키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서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현행조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시책의 추진과 규제의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원칙)**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라야 한다.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구청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 기관 등을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규제 심사 등)** ① 구청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결과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중요 규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기존규제의 정비)** ① 구청장은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구에 소재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존치 필요성을 요청받은 경우 또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존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존규제가 제3조에 따른 규제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해당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폐지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 규제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2. 규제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규제 소관 국장 및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현지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등)**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규제개혁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